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5. 6. 24.(화)



행정복지위원회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8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9.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12.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
13.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9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63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7일

2. 제안사유

- 디지털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도박에 접근하고 경험하기 쉬워짐. 또한 가족 및 교우관계 단절, 범죄 등 2차 문제로 이어지는 청소년 도박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홍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의 2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전자·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4.3%가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하였으며, 그중 20%가량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의 이용자수는 2020년대 대비 14배 폭증, 불법도박 중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안이 유와 같이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상 도박이 포함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지원사업 추진시 광역의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64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7일

2. 제안사유

-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범위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시간 및 연장근무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휴무·연장운영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2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 민원실 운영시간 지정, ② 민원인 편의 제고사항, ③ 민원실 연장 운영 등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 행정기관이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점심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 조문으로 규정(안 제4조)하였으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사전 홍보, 편의 제공(대기공간,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사전 예약제 등),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를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장운영은 민원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1일 2시간 이상 초과 운영을 자제하고 있기에 안 제6조에서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운영을 명기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민원실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기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및 연장 운영 실시, ▲민원실 근무자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65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7일

2. 제안사유

- 건축물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에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및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구조 분야에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9조제1항)
-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건축물 연면적 확대(안 제19조제1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 제22조제3항제5호~제7호)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연장 제한 근거 마련(안 제22조제5항·제6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은 ①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②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 확대,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등입니다.

- 2024년 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일 2025년 12월 이전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통해 향후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과 관련하여 기존 별도의 규정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로 규정한 사항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 규모 건축물 방치에 따른 안전 문제 사전 예방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였다 판단됩니다.

-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제22조(가

설건축물)에서 신설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를 비롯,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
게·경비 시설, 비가림 및 공기막 구조물 등의 경우 제15조제5항제1
호부터 제14호와 비슷한 용도로써 적용가능하다 판단되며, 해당 시
설물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현장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하던 해석상의 혼선을 줄여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
니다.

- 위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정합성 유지와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
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62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7일

2. 제안사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책무등·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정보 연계·통합 및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를 뜻합니다.
- 과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범국민적 이해를 위해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이후 2018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에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의 2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인증도시는 10개 도시, 스마트도시 정부 지원사업 추진 지자체는 147개의 지자체입니다.

구 분	인 증 도 시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김해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시흥시
중소도시(인구 50만 미만)	강릉시, 대구 달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오산시, 서울 종로구

- 현재, 대구광역시 및 관내 자치구 중 스마트도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3곳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조문
대구광역시	· 스마트도시계획 ·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 실무협의회 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계획수립 ·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실무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계획수립 ·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전문인력 양성 등 · 주민참여

- 상위법령상 조례위임조문으로 명시된 사항은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②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6조 및 제9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 조문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진행되는 사항으로써 계획수립 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달성군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에, 현재 대구광역시에 서 진행되고 있는 『대구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수립』(2021년~2025년)의 진행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상 명기된 조례위임조문을 규정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계획 종합계획의 방향성과 연계를 통한 상위계획과의 체계적 연계를 도모한 점 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77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7일

2. 제안사유

- 행정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과 중심의 부서를 분리하고,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팀을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기준인건비 초과사용에 따른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국 단위 개정사항 : 안 제3조, 제6조
 - 명칭변경 : 자치행정국 → 행정국
 - 과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 기획예산과 : 과 분리(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 자치행정과 : 명칭변경(총무과)
 - 교통과 : 과 분리(교통과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사회복지과 : 명칭변경(생활보장과)
 - 행복나눔과 : 명칭변경(장애인복지과)
 - 가족정책과 : 과 신설
 - 청소위생과 : 과 분리(청소위생과 → 청소자원과, 위생과)
 - 청소자원과 : 국 이동(주민복지국 → 경제환경국)
 - 안전하천과 : 명칭변경(안전총괄과)
 - 하수하천과 : 과 신설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 기획예산과 : 팀 분리(정책사업 → 정책사업1, 정책사업2)
팀 이동(홍보, 혁신평가, 인구청년정책 → 홍보협력과)
 - 홍보협력과 : 팀 이동(홍보, 혁신평가, 인구청년정책 ← 기획예산과)
명칭 변경(혁신평가 → 평가지원)
 - 도시공원과 : 신설(조경사업)
명칭 변경(공원개발 → 공원조성, 공원관리 → 조경관리)
 - 교통행정과 : 팀 이동(교통행정, 차량관리, 차량등록 ← 교통과)
 - 교통지도과 : 팀 이동(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특사경 ← 교통과)
 - 청소자원과 : 팀 이동(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관리 ← 청소위생과)
명칭 변경(재활용 → 자원순환)
 - 생활보장과 : 팀 이동(주거의료복지 ← 행복나눔과)
 - 장애인복지과: 팀 이동(장애인복지 ← 사회복지과), 신설(장애인시설)
 - 가족정책과: 신설(아동정책), 팀이동(드림스타트, 아동보호 ← 행복
나눔과, 여성가족 ← 복지정책과)
 - 위생과: 팀 이동(위생행정, 위생지도, 식품안전 ← 청소위생과)
 - 도시정비과: 팀 분리(농업시설 → 농업시설1, 농업시설2)

- 하수하천과 : 신설(하수관리), 팀 이동(하수시설 ← 도시정비과, 하천시설, 하천관리 ← 안전하천과)
- 체육진흥과 : 명칭변경(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1, 생활체육시설 → 체육시설2)
- 7개 읍면(화원읍, 다사읍 제외) : 팀 통합(복지+맞춤형복지 → 맞춤형복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를 신설하여,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국 명칭변경 및 과 분리, 명칭변경 등의 업무 조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4.3.29)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함에 따라 본 조직개편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 현 정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군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78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7일

2. 제안사유

- 행정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과 중심의 부서를 분리하고,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팀을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기준인건비 초과사용에 따른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 조정 함

3. 주요내용

- 시험수당 지급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40명 → 1,052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1,015명 → 1,027명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 : 안[별표 2]
 -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 5급 상당 이상 : 30% 이내

- 6급 상당 : 40% 이상
- 7급 상당 : 30% 이내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안[별표 3]

- 총 정원 : 1,040명 → 1,052명(+12)
- 본청 정원 : 669명 → 693명(+24)
- 읍면 정원 : 235명 → 223명(-12)
- 연구사 정원 : 4명 → 3명(-1) / 별정직 정원 : 3명 → 4명(+1)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사유서 첨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에 따른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제1항제3호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에 해당합니다.

- 또한, 별정직 공무원 5급 및 7급 상당 비율은 축소하고, 6급 상당 비율은 확대함으로써 실제 업무 배치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직급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조직 내 중간관리자 역할이 필요한 6급 상당 인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집행력과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원 조정을 통해 민선8기 군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79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7일

2. 제안사유

- 소식지 편집 및 제작, 발행 등을 위해 소식지 편집위원회 활성화
-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및 보완

3. 주요내용

- 위탁교육훈련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와 관련된 사항(안 제2조)
-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 →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
 -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 관련 분야의 군 소속 공무원
 - 상임위원 삭제
- 소식지 편집위원회 서기 인원 수정(안 제8조)
 - 서기 2인 → 서기 1인

-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시기 수정(안 제9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 → 반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
- 자료수집 삭제(안 제11조)
 -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 삭제
- 수당 및 여비지급 삭제(안 제14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 삭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 기존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관련 분야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은, 편집위원 구성의 내부화를 통해 정책 일관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군정 홍보에 적합한 방향으로 편집 방침을 일원화하고, 운영의 신속성과 행정과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식지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기존 수시개최에서 연 2회 이상 규칙화하여 편집위원회의 정례화를 유도하여 조직의 계획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행정 조직의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 편집위원회를 내실화 한 점 등을 볼때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80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실무와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 실무를 일치시키고자 함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포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
 - 고향사랑기부금법, 국가유산기본법 제·개정 내용 반영
- 기타 실무와 상이한 조항 정비
 - 답례품선정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 기금 총당 조항을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정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비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각종 행사, 교류사업, 기부자 예우 및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근거 명시
 - 고향사랑기부제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실무와 상이한 경우 조례를 정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답례품 선정위원회 중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함에 따라 답례품 선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실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기금을 충당해야하는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답례품 제공에 대한 기금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점, 실무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한점 등을 볼 때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81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민선 8기 제2~3차년도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 중 행정구역 조정 관련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검토결과를 수용
- 구지면은 2022년 2월부터 계속해서 인구 2만 명을 초과하였고,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를 이루고 있어,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 40%,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를 넘어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갖추
- 지역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읍승격 추진에 대한 구지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현황

구분	면적 (km ²)	행정구역			행정기구 정·현원		
		법정리	행정리	반	기구	정원	현원
달성군	428.37	95	334	2,890	6국 1실 28과 2직속기관	669	672.5
구지면	39.84	15	34	192	1개면 6담당	22	22

나. 도시여건 현황

(2024. 12. 31. 기준)

구분	인구	면적	가구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인구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구지면	20,764명 (19,021명)	39.84km ²	8,988가구	15,532명	82%	7,922가구	88%

다. 인구추이

(2024. 12. 31.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율	
						5년 평균	전년도 비교
구지면	14,151명 (13,263명)	19,860명 (18,950명)	20,734명 (19,609명)	20,844명 (19,380명)	20,764명 (19,021명)	10% (9%)	-0.3% (-1.8%)

* ()은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인구수

라. 향후 인구증가 요인

- 신규 주거시설(착공 및 입주 진행 시설)

주거시설 명	세대수	인구수	입주년월
총 계	448	1,422	
대구국가산단 행복주택	448	1,012	'28. 1. 예정
(주)엘엔애프 기숙사	-	410	입주 중

- 신규 주거시설(공동주택 부지)

구분		세대수	인구수
총 계		3,707	8,377
60m ² 이하	A6	1,508	3,408
60m ² ~85m ² 이하	A7-2	1,272	2,874
	A9	927	2,095

※ 통계청 2022~2052 장래가구추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2.26명 반영

마. 공공시설

구분	출장소 수	파출소	농협	우체국	지도소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교	역	예비군 중 대	의료 시설	기타
구지면	-	1	1	1	-	2	2	-	-	15	13

※ 기타 : 중앙119구조본부, 도동서원, 구지축구장, 구지평촌파크골프장, 구지면 작은도서관,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물기술인증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구지 새마을금고, 노사평화의 전당,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미래차시험연구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바. 재정규모

- 세출예산 : 4,097백만 원(인건비 : 2,368백만 원)
- 지방세 : 37,576백만 원
- 세외수입 : 690백만 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구지면의 읍승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지면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읍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인구 2만 명 이상을 지속 유지하고 있어 법 제10조를 충족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인구는 20,764명입니다. 특히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인 시가지 인구 비율 82%,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88%로 법적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수용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인구 반영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게 되면서 정책 수용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 구지면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달성2차 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단지 종사자 및 정주민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민원 접수 건수는 33,446건에서 41,77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복지·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구지면은 외국인 주민수가 관내 2번째로 많은 지역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정착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다문화 행정 및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5년 4월 진행된 주민 의견조사에서는 전체 세대 중 58%가 참여하였고, 그 중 99.9%가 읍 승격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민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수치이며, 승격 시 생활 인프라 확충, 교육·문화 기반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인구 증가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아파트 9개 단지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선 철도는 구지면과 대구 도심 및 창원, 부산을 연결하게 되어 정주·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연계된 유가읍·현풍읍이 읍으로 승격된 사례와 유사한 발전 경로로, 구지면 또한 동일 생활권 내 도시로서 그 위상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이처럼 구지면은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 수요의 증가, 주민의 적극적 지지, 교통 및 산업 기반 확충,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읍 승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 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82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일몰 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자동차세 감면기한 (현행) 2025. 6. 30. → (개정) 2027. 12. 3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자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감면신청은 2024년까지였으나, 2024년 일부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이에 기존 조례의 제2조 면제 기한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2027년까지 연장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83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을 정비

3.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 변경(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과 관련하여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한 것입니다.
- 현행 조항은 ‘사용허가일’ 과 ‘실제 사용 시작일’ 을 모두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어 행정적 혼선을 유발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 로 단일화함으로써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실제 사용일에 대한 해석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향후 회계, 감사 등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의 ‘실제 사용 시작일’ 을 기준으로 처리된 사례의 경우 조례 개정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84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
 -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 노후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주민자치활동·교류행사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달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 기후변화, 미세먼지 농도 증가, 계절 간 온도 편차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외 운동 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지훈련 특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체육 인프라를 확충,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스포츠 관광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

- 비슬산 유스호스텔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공간이 부족하여 단체행사를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재 잔디광장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조성하고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단체 이용객 확보 및 호스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

- 위 치 : 현풍읍 부리 352-2번지 일원
- 기 간 : 2025. ~ 2027. 12.
- 규 모 : 부지면적 3,253㎡ 연면적 3,025.69㎡, 건축면적 757.32
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1층 : 현풍읍 행정업무공간
 - 2층 : 건강증진지원공간
 - 3층 : 청소년 지원공간
 - 4층 : 대강당, 현풍읍 역사전시관
- 총사업비 : 159.11억원(국비 50억, 시비 25억, 군비 84.11억)
 - 신축비 158.71억(공사비 135억, 용역비 및 예비비 23.71억)
 - 프로그램 운영비 0.4억

※기준가격

- 건물 철거(시가표준액) : 319,142,398원
- 건물 신축(사업비) : 15,871,000,000원

- 추진상황

- 2024. 4. : 20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구상 회의
- 2024. 6. : 현풍읍 도시재생 실행계획 HUG 사전컨설팅
- 2024. 8. :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회
- 2024. 9. : 시·도 공모 신청
- 2024. 10. ~ 11.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시·도광역평가(발표평가)
- 2024. 11. :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타당성 평가(발표평가)
- 2024.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도시재생특위 심의 및 결

과 발표(선정)

- 2025. 1. : 2025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의뢰
- 2025. 3. : 2025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조건부 승인

- 향후 추진계획

- 2025. 5. ~ 10. : 건축 기획 용역 진행
- 2025. 10. ~ 2026. 9. : 기본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진행
- 2026. 10. ~ 2027. 12. : 착공 및 준공

나. [달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 위 치 : 화원읍 명곡리 8-2번지 일원(화원 명곡체육공원)
- 기 간 : 2024. 5. ~ 2027. 2.
- 규 모 : 부지면적 22,870㎡, 연면적 13,500㎡, 지상1층
- 주요시설 : 에어돔 축구장 1식
- 총사업비 : 100억원(전액군비)
 - 공사비 82억, 설계비 10억, 예비비 8억

※기준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10,000,000,000원

- 추진상황

- 2024. 5. ~ 2025. 3.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25. 4. : 사업계획 수립
- 2025. 4. ~ 7. : 공원조성변경계획 용역 및 市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25. 7. ~ 9. : 市 투자심사 진행
- 2025. 7. ~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5. 8. : 의회현안사업 보고
- 2025. 9. :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5. 11. : 일상감사 진행(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 2026. 1. ~ 3. :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용역 일반경쟁입찰
- 2026. 3. ~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7. ~ 2027. 2. : 협상에 의한 계약(물품) 에어돔 설계·제작
- 2026. 10. ~ 2027. 2. : 착공 및 준공

다.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

- 위 치 : 유가읍 용리 31-2번지
- 기 간 : 2025. 2. ~ 2026. 10.
- 규 모
 - 증축(535㎡) : 대강당 1개소(100인), 중회의실 2개소(30인)
 - 리모델링(1,363㎡) : 로비, 대강당, 중회의실, 소회의실, 노래방
- 총사업비 : 21.45억원 (증축비 19.21억)
 - 설계비 0.56억, 공사비 18.89억, 감리비 1.74억, 기타 0.26억

※기준가격

- 건물 증축(사업비) : 1,921,000,000원

- 추진상황
 - 2025. 2. : 사업계획 수립
 - 2025. 4. : 공공건축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25. 7. : 투자심사
 - 2025. 9. : 사업예산 편성
 - 2025. 10. :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진행
 - 2026. 4. : 착공
 - 2026. 10. : 준공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5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 우선,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현풍읍 부리 352-2번지 일원에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9억 1,100만원(국비 50억, 시비 25억, 군비 84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사는 행정, 복지, 청소년 활동, 역사문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화원읍 명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달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사업은 약 13,500㎡ 규모의 에어돔 축구장을 포함하는 시설로, 총 100억 원의 군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실내 체육 공간 확충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제고, 주민 건강증진 및 체육 인프라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 번째로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유스호스텔의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체류객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증축 계획입니다. 증축 후에는 숙박 공간의 확충뿐 아니라 세미나실, 체

험학습 공간 등 프로그램 기능이 강화되어 비슬산권 관광 거점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 수련활동, 타 지역 수학여행 유치 등 교육·관광 기능이 연계되며, 실질적 운영성과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이번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 2건의 신축건물과 1건의 기타건물, 약 280억원 가량의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며, 1개의 건물을 처분하여 3억원 가량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 이처럼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별로 공공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타당성 및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85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 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노인복지관	옥포읍 옥포로 13	2,999.68㎡ (지하1층, 지상3층)	17명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시설장	부장	정규직	비정규직
인 원	17	1	1	8	7

라. 위탁기간 : 2025. 8. 1. ~ 2030. 7. 31. (5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4. : 운영평가 서류 접수

○ 2025. 4.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평균 90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향후일정

- 2025. 6. : 군의회 동의

- 2025. 7. : 재계약체결 및 공보 게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2020. 8. ~ 2025. 7.)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 복지재단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 교양·오락 등 다양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①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② 기부문화 정착사업, ③ 복지프로그램 개발사업, ④ 복지시설 간 협력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 설립되었으며, 2009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된 이후, 총 16년간 3회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5. 7.)하였으며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오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90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86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 상정일자: 2025년 6월 18일

2. 제안사유

-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점포 전세금 대여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점포 전세금 대여금 상한액 인상(안 제10조제2항)
 - 현행 :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개정 :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단, 개인창업자 : 현행 2천만원 이하 => 개정 3천만원 이하
- 점포 전세금 대여기간 연장(안 제10조제3항)
 - 현행 : 최장 6년 => 개정 : 최장 10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 자활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와 직업훈련, 창업, 자산형성 등의 다양한 자활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상 기금의 용도는 정해져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례로써 기금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26조의4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임대지원의 경우 1천만원~3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3천만원 한도(2024년 한도 상향)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5년, 최장 10년까지 지자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기관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다 군민에게 복리를 제공하고자 한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